

국 무 총 티 행 정 조 정 침

국무총리 치시 제 10호

1976. 7. 29.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산업시설 시찰 조정에 관한 지침

최근 산업시설 시찰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일부 주요 기관산업의 생산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산업시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생산업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시설 시찰 조정 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오니 소기의 성과를 거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유첨: 산업시설 시찰(견학)조정 지침-1부. 끝.

국 무 총 티

수신처: 가 4,5,8,10-46

나1-11

산업시설 시찰(견학) 조정 지침

1. 목 적

근래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각계 각층의 시찰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부 주요 기관 산업의 생산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통제하여 산업시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생산업체에도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방 침

가. 조정 대상

행정 각 기관(각원·부·처·청·서울특별시·부산시·각도)주관하에 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산업시찰을 하는 경우 본 지침에 의한 조정 대상으로 한다.

나. 자체 조정

행정 각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순수 민간인(개인, 단체, 학생단체 포함)의 시찰(견학)은 시찰(견학)희망자와 당해 기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다. 대상업체 선정

국내유수 산업 시설중 자기기업 홍보를 희망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시찰의 빈도가 격증되고 있는 다음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본 지침의 조정 대상으로 한다.

- 1) 호남 정유
- 2) 석유화학 지원 공단
- 3) 대한 석유공사

- 4) 약간 수출 기관 지역
- 5) 한국 내도
- 6) 포항 제철
- 7) 현대 조선
- 8) 기타 총무처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업체

탁. 시찰인원, 시기통합

산업시찰의 인원, 회수, 시기는 가급적 통합조정하여 단체
시찰을 원칙으로 한다.

마. 특례

정부초청외빈, 국제대회 영접에 따른 산업시찰은 별도 정부 행사
계획에 의한다. 다만, 행사계획 작성은 시찰업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세부 절차

가. 조정 승인

총무처장관은 본 지침에 의거 각 중앙행정 기관의 장, 서울
특별시장의 승인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 승인 통보한다.(서울
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 단체 및 정부관리 기업체는 주무부
장관을 경유한다.)

나. 승인 요청

조정 대상 기관의 장은 시찰목적, 인원, 세부적인 시찰 일정
및 대상업체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시찰일 14일
전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아. 승인 및 통보

총무처 장관은 국무총리의 명에 의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승인 요청기관 및 시찰대상업체에 통보한다.

4. 행정 사항

가. 시찰 대상업체에 대한 조치

상공부 장관은 각 산업체에 본 지침을 시달하여 그 이행을 촉구토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의전행사를 생략하고 효과적인 안내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산업시설 홍보활동

문화공보부 장관은 주요 산업 시설을 촬영, 홍보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널리 배부하여 산업시설을 시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조치한다. 끝.